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훼의 원산지 표시 및 홍보 의무화〉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8호)

〈화환의 표시제 도입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2호)

〈국가 등의 생화 이용 촉진 근거 마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1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화 소비 촉진 규정 신설	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화 소비 촉진 규정 신설	5
3.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10
4.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등	17
5. 화환 표시 의무 및 화환 표시에 대한 조사 주체 확대	22
6.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29
7. 화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33
※ [참고 1] 화훼 품목 현황 (공영도매시장 품목 기준)	39

I. 제안경위

1. 이병진의원안(2200248)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김도읍의원안(2201892)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3. 김도읍의원안(2201912)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병진의원안(2200248)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

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2. 김도읍의원안(2201892)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

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3. 김도읍의원안(2201912)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개정안 3건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¹⁾ 중 3건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고, 1건은 회부되었으나, 4건 모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화 소비 촉진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김도읍의원안(2201912)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 행	김도읍의원안(220191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u><신 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 의안번호 2120536,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66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55,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658,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현 행	김도읍의원안(2201912)
	<u>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10년간 국내 화훼 재배농가수('13년 9,147호 → '22년 7,134호), 재배면적('13년 6,430ha → '22년 4,229ha), 판매량('13년 12억 5,300만 본 → '22년 7억 4,000만본), 판매액('13년 7,368억원 → '22년 5,651억원) 등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화훼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화훼 산업 통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배농가(호)	9,147	8,688	8,328	7,837	7,421	6,918	6,824	7,069	7,009	7,134
재배면적(ha)	6,430	6,222	5,831	5,365	4,936	4,353	4,244	4,299	4,218	4,229
판매량(백만본)	1,253	1,138	1,017	958	872	832	794	746	734	740
판매액(억원)	7,368	7,047	6,332	5,602	5,658	5,385	5,174	5,269	5,382	5,65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2 화훼재배현황」, 2023. 8.

반면, 합성섬유와 플라스틱·철심 등을 이용해 천연 식물을 모방해 만든 조화의 경우 인테리어, 헌화, 화환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소비되

면서, 수입액이 2017년 약 2,815만 달러에서 2021년 약 3,810만 달러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조화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조화 수입 현황>

(단위: USD1,000 / 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 금액	플라스틱 재질	13,074	17,084	15,831	15,780	15,527
	그 밖의 재질	15,080	17,089	19,468	16,844	22,569
	합계	28,154	34,173	35,299	32,624	38,096
수입 중량	플라스틱 재질	2,388.8	2,585.0	2,318.4	2,092.2	2,051.0
	그 밖의 재질	2,100.5	2,454.0	2,953.8	2,647.1	3,105.3
	합계	4,489.3	5,039.0	5,272.2	4,739.3	5,156.3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조화 안전실태조사」, 2021.12.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침체된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플라스틱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화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묘지, 납골당 헌화용 꽃의 대부분이 조화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²⁾을 고려하였을 때,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³⁾(현행법 제14조~제16조)를 도입(2019. 8. 20. 제정) 및 시행(2020. 8. 21.)하고 있음.

생화 소비 촉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 저가 화환 제조업체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회피를 위해 생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⁴⁾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⁵⁾, 공공기관⁶⁾으로 하여금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현재 침체된 국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2) 서울대학교, 「국내 조화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1. 12.

3)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은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하도록 함.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2022. 5.)에 따르면 조화화환 유통 비율은 2020년 10월 0.9%에서 2022년 5월 5.1%로 증가하였음. 화환별 조화의 비율을 살펴보면, 축화화환의 경우 제도 시행 전 80%에서 제도 시행 후 9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근조화환의 경우 제도 시행 전 10%에서 시행 후 20%로 증가하였음.

5)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6) 공공기관 347개

다만, 개정안 제3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조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수정⁷⁾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제2항의 ‘생화’를 ‘국내산 화훼’로 용어 변경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조(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책무) (생 략) <신 설>	제3조(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u>생화</u> 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u>국내산 화훼</u> 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유사 입법례

-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하 생략>

3.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김도읍의원안(2201892)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현 행	김도읍의원안(2201892)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u>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u>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u>지정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 <u>화훼</u> ----- ----- ----- ----- ----- ----- <u>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u> <u>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u> <u>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u>신청·지정 절차</u>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u>지정절차</u> ----- -----.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u>지정할 수 있다.</u>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 ----- ----- ----- ----- <u>지정하여야</u> <u>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⁸⁾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으로 지정요건⁹⁾을 갖춘 기관을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2020년 8월 동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2024년 7월에 이르러서야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 사업¹⁰⁾을 통하여 충북 음성군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최초 선정하였고,

8)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절할 것

9)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구분	[별표 1] 내용
조직	화훼문화의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는 것
인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원예학과, 조경학과 등 원예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가. 화훼를 활용한 교육 및 화훼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설 나. 음향설비, 영상기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다.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전산장비

10)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사업 개요

- '24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40억원 반영(사업기간 '24~'26년 3년)

* 사업비(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 ('24) 4억원, ('25) 16, ('26) 20

2023년 5월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현황>

- '24.7월 충북 음성군을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최초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보완 후 지정 공고 예정('24.8월 중)
- 계획 수립('24.4.) → 모집 공고(~5.17) → 평가 선발(7.17) → 사업계획 보완(8월 중) → 지정 및 공고(8월 중)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수행 업무>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

개정안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화훼문화 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

관 지정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국내 화훼 재배농가수('13년 9,147호 → '22년 7,134호), 재배면적('13년 6,430ha → '22년 4,229ha), 판매량('13년 12억 5,300만본 → '22년 7억 4,000만본), 판매액('13년 7,368억원 → '22년 5,651억원) 등 국내 화훼 산업의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화훼 산업 통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배농가(호)	9,147	8,688	8,328	7,837	7,421	6,918	6,824	7,069	7,009	7,134
재배면적(ha)	6,430	6,222	5,831	5,365	4,936	4,353	4,244	4,299	4,218	4,229
판매량(백만본)	1,253	1,138	1,017	958	872	832	794	746	734	740
판매액(억원)	7,368	7,047	6,332	5,602	5,658	5,385	5,174	5,269	5,382	5,65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2 화훼재배현황」, 2023. 8.

수입 화훼 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화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내 화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화훼 관련 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화훼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화훼문화

진흥 전달기관을 통하여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보임.

관련 입법례로, 말산업육성법 제11조제3항은 말산업특구의 지정 등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관련 입법례>

<말산업 육성법>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말산업 진흥계획서

2. 지정등의 신청 사유서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말산업 진흥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예정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는 관련 입법례, 화훼산업 발전의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는 화훼문화 진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화훼문화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김도읍의원안(2201892)은 우수회원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고, 우수회원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u>품질관리</u> 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 화훼를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는 회원 중 화훼의 품질관리</u>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회원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회원 선정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u>

현행법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1차(‘22~’26)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부터 우수화원을 인증하고, 우수화원은 원산지 표시, 정찰 가격 표시 등 인증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소매꽃집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었음¹¹⁾.

그러나 우수화원 선정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화원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며, 우수화원의 구체적인 선정 요건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한국화원협회는 자체적으로 2013년부터 ① 본인 소유, ② 3년 이상의 운영 경력, ③ 화훼 자격증 소지 등을 요건으로 ‘착한 꽃집 인증제¹²⁾’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¹³⁾하고 있음.

동 제도는 화원을 꽃 생활화 홍보의 선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화원협회 주관으로 도입·시행 중이며, ‘13년~’20년 동안 ‘착한 꽃집’ 642개소가 인증되었음.

‘착한 꽃집 인증제’는 한국화원협회가 정기 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취소 등의 처분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음.

‘착한 꽃집 인증제’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없으며 국내산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11) 제1차(‘22~’26)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18p

12)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원을 꽃 생활화 홍보의 선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화원협회 주관으로 ‘착한 꽃집’ 인증제를 도입·시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13년~’20년 동안 ‘착한 꽃집’ 642개소가 인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착한 꽃집’ 인증제는 한국화원협회가 정기 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취소 등의 처분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음

13) ‘13년~’20년 동안 ‘착한 꽃집’ 642개소가 인증되었음.

역할은 미흡한 상황으로 보임.

<착한 꽃집 인증제>

구 분		내 용
자 격 요 건	대상 주체	- 전국의 모든 소매 꽃집(회원경영자)
	사업장 소유	- 본인 소유 판매 공간에서 영업 중인 자(임대·shop in shop 포함)
	경 력	- 인증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필(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회원 운영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자격 보유	- 화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국가 및 민간자격 포함) * 자격증 사본 제출(2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1개만 제출)
평 가 항 목	판매장 환경	규모에 상관없이 청결함, 쾌적함, 간판, 상품정보 표시 등(20점)
	전문성	화훼와 관련하여 풍부한 상식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정도(15점)
	품질·상품 다양성	판매중인 화훼상품의 품질 수준과 취급 품목의 다양성(30점)
	서비스	고객 응대(인사, 상품설명 등) 원산지표시 및 가격정찰제 시행 등(15점)
	교육	화훼관련 교육 이수 정도 (품질관리, 고객서비스, 경영개선교육 등) (10점)
	지역과 연계성	지역 사회 꽃 생활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활동 정도(10점)
의 무 사 항	원산지 표시	- 회원에서 판매하는 모든 수입상품에 원산지 표시 - 회원에서 판매하는 국화 등 11개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 회원에서 판매하는 10개의 주요 상품에 가격을 표시
	보수교육 이수	- 인증기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 * 품질관리, 고객서비스, 경영개선교육, 신화환제작, 상품제작, 홍보 등 * 교육비는 교육생 부담 원칙 - 매 2년마다 회원경영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착한꽃집 홍보 협조	- 인증기관이 시행하는 이벤트에 동의하고 참가 - 착한꽃집에 선정된 일반회원은 (사)한국화원협회 회원과 마찬가지로 협회의 '착한꽃집 운영계획'에 따라야 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우수회원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

가하고 우수회원 선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수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요건 마련 시 국내산 화훼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화훼 소비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산 화훼를 취급하는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화환 표시제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국내 화훼 생산시장은 인건비·자재비 증가, 대면 행사 축소 경향에 따른 화훼 소비시장 감소,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입 화훼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으며, 화훼 소비시장도 수입 화훼에 잠식되고 있음.

＜화훼 수출입현황＞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2023년						202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수출물량	79	110	60	37	75	169	68	51	134	88	47	0
총수입물량	4,636	7,298	6,785	8,055	8,697	9,520	8,668	5,836	8,442	8,061	6,714	0
총수출금액	771	1,135	697	617	1,096	1,469	856	210	1,480	859	487	0
총수입금액	7,831	11,168	11,826	16,194	16,392	16,370	15,354	14,195	17,822	19,396	12,718	2
무역수지	-7,060	-10,033	-11,129	-15,577	-15,296	-14,901	-14,498	-13,985	-16,342	-18,537	-12,231	-2

※ 자료 : 화훼유통정보시스템, 월간 화훼 수출입 현황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수화원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국내산 화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우수화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우수화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의 취급 비율을 추가하여도 우수화원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음.

5. 화환 표시 의무 및 화환 표시에 대한 조사 주체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은 ① “재사용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②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김도읍의원안(2201892)은 ①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생화의 재사용 여부 외에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② 화환 표시 조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임(김도읍의원안(2201892) 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u>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4조(<u>화환</u> 의 표시 및 고지) ① <u>화환을</u> ----- ----- ----- ----- <u>화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u> ----- - <u>이 경우 전단에 따른 화환의 표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 <u>1.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u> <u>2.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u> <u>3. 생화의 재사용 여부</u>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u>재사용 화환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u>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u>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u>재사용 화환의 표시</u>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u>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u>”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재사용 화환의 표시</u>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u>재사용 화환의 표시</u>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제16조(<u>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u>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u>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u>,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u>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u>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5.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u>화환의</u>----- ----- -----. 제15조(<u>화환의 거짓표시 금지</u> 등) ----- -----<u>화환에</u> -----<u>표시</u> -----<u>의무자</u>----- -----. 1. <u>표시</u>----- ----- 2. <u>표시</u>----- ----- 제16조(<u>화환 표시의 조사</u>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u>----- -----<u>화환</u>----- ----- -----.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u>화환</u>----- ----- -----.

현행	개정안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 -----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u>재사용</u> <u>화환의</u>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 <u>화환에</u>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u>재사용 화환</u> 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 <u>화환</u> ----- -----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u>재사용</u> <u>화환의</u>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u>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u>	3. ----- <u>화환의</u> ----- ----- <u>표시의무자</u>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u>재사용</u> <u>화환의</u> 표시를 손상·변경한 <u>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u>	4. ----- <u>화환의</u> ----- <u>표시</u> ----- <u>의무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생화 소비 확대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¹⁴⁾임.

동 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단속 실적¹⁵⁾을 살펴보면, 182건의 위반 실적이 적발됨.

<재사용 화환 표시제 단속 실적>

조사 장소	단속 건수	과태료 처분		
		3백만원	6백만원	10백만원
20,548개소	182건	173	9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생화 소비를 위축시키고 화훼 농가의 소득을 감축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조사(2022. 5.)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도입 이후 조화 사용 비율이 증가¹⁶⁾한 것으로 드러남.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는 생화 사용을 감축하

1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5) 2020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단속 실적임.

16) 축화화환은 조화 사용 비율이 80%대에서 90%대로, 근조화환은 조화 사용 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상승함.

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 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권한을 종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확대·부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화환 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화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산 생화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사용화환 표시제 시행 후 조화의 사용이 오히려 확대된 경우와 같이 규제 강화가 오히려 관련 사업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 화훼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¹⁷⁾한 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7)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에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음.

다. 검토의견

개정안의 경우 화환의 표시사항으로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안 제14조제1항제1호), 화환 제조업체 및 관련 화원은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를 관리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그러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¹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¹⁹⁾,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²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인 화훼의 종류는 국내산 화훼 11품목(절화²¹⁾)과 수입산 화훼 전체로 한정됨.

이는 국내산 화훼의 경우 전체 화훼 품목 578개 중 1.9%만이 원산

18)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19)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0)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별표 1]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21) 절화류: 꽃·줄기·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지 관리 의무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화환에 사용된 모든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화원 등이 기존에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화훼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결과²²⁾를 가져옴.

그러므로 화환 표시제 도입 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표기 의무와 관련하여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따른 화훼의 원산지 표시제의 규정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위반 시 과태료 단속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모든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취지의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 원안, 의안번호 제2200248호)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바,

개정안의 화환 표시제 도입에 따른 원산지 표기의무 논의 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22) 「화환 유통현황 조사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단국대학교, 2020. 3. 9.)에 따르면, 화환은 3~8개 품목이 사용되어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인조화 사용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6.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김도읍의원안(2201892)은 화환 표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와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²³⁾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 및 점검 업무를 담

23)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하고 있음. 2023년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산물원산지관리(6032-311) 사업의 내역사업인 원산지관리에 편성된 예산 3억 6,000만원을 통하여 추진되었음. 그러나 인력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사용 화환 외에 일반적인 화환까지 원산지 등의 표시를 확대되어, 그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제의 도입은 화환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여 화환의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신고포상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²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포상금 지급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포상금”이란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행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

24) 다른 신고포상제 사례를 참고할 때, 전문 파파라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전으로,

포상금 중 위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본래 공무원이 하여야 할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을 일반 국민이 사실상 수행하게 하는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²⁵⁾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²⁶⁾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음.

<원산지 표시제 포상금 예산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포상금 예산(백만원)	260	360	360	36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포상금 제도 입법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5)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2019, 603p

26)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화환 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의 이익과 신고포상제도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7. 화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이병진의원안은 화훼를 ①수입하는 자, ②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원산지 표시) ① 화훼를 수입하는 자,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10년간 화훼 수입이 급증('14년 12,565톤 → '23년 22,278톤)하고 있는 가운데, 화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화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화훼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

년도	수출(중량)	수출(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2014	5,297.5	40,624.8	12,565.3	57,213.4
2015	3,868.5	28,461.6	13,480.8	60,769.4
2016	2,937.4	26,433.6	14,625.7	62,971.2
2017	2,710.5	23,629.6	13,982.4	65,360.9
2018	2,162.5	18,685.4	19,447.4	80,799.0
2019	1,901.8	17,159.5	22,091.4	86,515.3
2020	1,665.1	15,857.8	21,225.5	81,716.1
2021	1,349.9	16,557.8	21,678.2	105,252.3
2022	1,007.1	12,446.3	23,075.2	125,048.1
2023	710.6	9,312.5	22,278.3	119,165.6

※ 자료 : 농식품수출정보(KATI)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²⁷⁾ 및 동법 시행령 제3조²⁸⁾, 「농수

27)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28)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²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화훼 총 578품목(절화 240품목, 관엽 307품목, 난 31품목) 중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산 화훼류 11품목(절화) 및 수입 화훼류 전체로 한정됨.

이에 개정안은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화훼류 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지도·관리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

29)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별표 1]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화훼의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화훼 구매 시 고려사항³⁰⁾,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점검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화훼의 경우 소비자들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타 농산물 대비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일부 수입 꽃 판매자들은 이러한 성향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2023년)에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³¹⁾하였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튜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음.

30) 소비자 화훼구매 시 고려사항(화환유통현황 조사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단국대, '20.3월) : 가격(63.5%), 디자인(18.8), 꽃의 종류(15.4), 색상(0.4)

31) 농림축산식품부,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보도자료)”, 2023. 5. 22.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례로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으로 제조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와 ②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례로 에티오피아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 등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화훼류 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³²⁾에 따라 화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훼에 관한 내용이라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률적

32)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1

화훼 품목 현황 (공영도매시장 품목 기준)

□ 총 578품목(절화 240, 관엽 307, 난 31)

○ 절화 240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1	장미	31	다알리아	61	베로니카	91	아이리스
2	국화	32	조팝	62	명자란	92	금평의다리
3	프리지어	33	맨드라미	63	영춘화	93	아가판서스
4	거베라	34	글라디올러스	64	꽃양배추	94	비부리움
5	리시안사스	35	소철	65	캄파눌라	95	말채나무
6	스톡크	36	석죽	66	코스모스	96	부프리움
7	백합	37	메리골드	67	왁스플라워	97	뽕뽕
8	유칼립투스	38	심비디움	68	허브	98	호엽란
9	유스가스	39	천일홍	69	아네모네	99	사루비아
10	튤립	40	과꽃	70	솔리다고	100	요안개
11	수국	41	불노초	71	클레마티스	101	그라스
12	작약	42	마가렛	72	등골나무	102	에키놉스
13	라넡쿨러스	43	스카비오사	73	브바르디아	103	신지매
14	알스트메리아	44	기린초	74	하이페리콤	104	히야신스
15	노무라	45	냉이초	75	아카시아	105	홍가시
16	카네이션	46	시레네	76	오니소갈룸	106	각구도라
17	해바라기	47	알리움	77	헬리옵시스	107	멜라루카
18	스타티스	48	아미초	78	스위트피	108	글로리오사
19	칼라	49	후록스	79	아게라덤	109	버들나무
20	안개꽃	50	파니쿰	80	개미취	110	도라지꽃
21	금어초	51	쿠루쿠마	81	남천	111	익시아
22	안시리움	52	아스그레피아스	82	심포리카르포스	112	산더소니아
23	옥시페탈룸	53	아스틸베	83	층꽃	113	은사철
24	편백	54	호접란	84	코와니	114	밥티시아
25	공작초	55	설유화	85	백일홍	115	리아트리스
26	캐모마일	56	디디스커스	86	루드베키아	116	데이지
27	델피니움	57	솔리다스터	87	극락조화	117	카랑코에
28	보리사초	58	헬레보루스	88	골든볼	118	물망초
29	골드킹	59	절화	89	수선화	119	헬레늄
30	엽란	60	용담	90	부들레야	120	폴리안테스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 화훼류 품목 11가지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121	보리	151	석무초	181	상사화	211	톱꽃
122	라이스플라워	152	유채	182	사철나무	212	둥글레잎
123	아킬레아	153	트리플룸	183	천리향	213	금낭화
124	스마일락스	154	조	184	케로네	214	속새
125	니젤라	155	다정금	185	노단새	215	접시
126	스모그트리	156	에키네시아	186	샬릭스	216	아그로템마
127	금잔화	157	매발톱	187	모나르다	217	금굴
128	핑크물리	158	홍죽	188	여우얼굴	218	범부채
129	쥐똥나무	159	사포나리아	189	연꽃	219	병솔꽃나무
130	유포로비아	160	억새풀	190	수레국	220	화살나무
131	백야	161	센토레아	191	치자	221	크리스탈
132	밀	162	벚꽃	192	아티초크	222	팔꽃나무
133	매화	163	애니고잔소스	193	팔손이	223	꽃호박
134	돈나무	164	동백	194	팜파스	224	아이비
135	풍선초	165	금사철	195	양란	225	펜스테몬
136	광나무(여정목)	166	헬리크리섬	196	몬스테라	226	코르딜리네
137	이끼시아	167	청지목	197	홍화	227	야자나무
138	라일락	168	영경귀	198	황금쥐똥	228	시네라리아
139	아스파라거스	169	아마릴리스	199	미니볼	229	옥잠화
140	미리오그라다스	170	드럼스틱	200	아코니툼	230	기리단사스
141	마타리	171	담쟁이	201	호랑이눈	231	초롱꽃
142	피토스포룸	172	백묘국	202	파리	232	진저
143	토마토	173	셀룸	203	반다	233	개나리
144	꽃고추	174	아스트란시아	204	까치밥	234	필라리스
145	에렌지움	175	유도화	205	레인보우	235	울마
146	탑사철	176	비단향	206	부추꽃	236	무스카리
147	연밥	177	작살나무	207	목련	237	창포
148	이베리스	178	부들	208	두메	238	먼나무
149	디스텔	179	맥문동	209	수수	239	니포피아
150	천조초	180	아로니아	210	체코수아	240	디지털리스

○ 분화(308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1	카랑코에	41	천낭금	81	트리안	121	오니슈가름
2	국화	42	애니시다	82	델피늄	122	아르메니아
3	야생화	43	히야신스	83	데모로호세카	123	코스모스
4	아이비	44	다알리아	84	행운목	124	산데리아
5	장미	45	숙근버베나	85	찔레	125	쥬리안
6	선인장(다육)	46	개발선인장	86	꽃고추	126	황금죽
7	스킨답서스	47	캄파눌라	87	식충식물	127	염자
8	허브	48	올마	88	튤립	128	여우꼬리
9	카네이션	49	페페	89	치자	129	아펠란트라
10	개운죽	50	홍콩야자	90	설란	130	아네모네
11	호야	51	산세베리아	91	파키라	131	카세올라리아
12	야자류	52	한련화	92	오스테우스펠름	132	맨드라미
13	고무나무	53	틸란드시아	93	무스카리	133	난타나
14	금전수	54	로벨리아	94	쿠페아	134	대국도
15	페라고늄	55	아스타	95	달개비	135	종이꽃
16	시클라멘	56	채송화	96	만데빌라	136	박쥐란
17	관엽류	57	보르니아	97	푸미라	137	칼라디움
18	포인세티아	58	안개꽃	98	석화	138	비올라
19	수국	59	부기수	99	크루시아	139	포테리카
20	베고니아	60	백일홍	100	해바라기	140	벤자민
21	스파트필름	61	메리골드	101	크로톤	141	세덤
22	일일초	62	극락조화	102	가자니아	142	과꽃
23	산호수	63	사랑초	103	코레우스	143	천리향
24	고사리과	64	아나나스	104	페츄니아	144	실란
25	꽃기린	65	자스민	105	임파첸스	145	죽백나무
26	아그로네오마	66	화이트스타	106	클레로덴드럼	146	라일락
27	몬스테라	67	철쭉	107	익소라	147	맥문동
28	마가렛트	68	천일홍	108	사루비아	148	페르시아
29	초화류	69	사철	109	마삭줄	149	팔손이
30	제라늄	70	라난크러스	110	유칼립투스	150	마따빠아
31	칼라데아	71	팬타스	111	호주매화	151	아메리칸블루
32	샤피니아	72	밀리온벨	112	나비난	152	송오브인디아
33	콩고	73	바이올렛박스	113	드라세나	153	덴드롱
34	아젤리아	74	남천	114	애란	154	유리호프스
35	안시디움	75	알로카시아	115	루피너스	155	금잔화
36	후리지아	76	카라	116	데이지	156	글록시니아
37	꽃양배추	77	석죽	117	구문초	157	필레아
38	아스파라거스	78	은행목	118	셀렘	158	커피나무
39	레드스타	79	백합	119	불로초	159	마리안느
40	수선화	80	신고니움	120	후쿠사	160	아디안텀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161	조란	201	프리물러	241	머루	281	유도화
162	오브코니카	202	제누드	242	파라솔	282	아돔
163	군자란	203	연하죽	243	불두화	283	백정화
164	능소화	204	옥천앵두	244	설화	284	황금볼
165	마라고이데스	205	시레네	245	아마릴리스	285	분꽃
166	인삼펜다	206	아이자카	246	옥잠화	286	빈카
167	신경초	207	알로에	247	블루벨	287	실버킹
168	피어리스	208	포도	248	쿠루쿠마	288	풍란
169	부자란	209	난	249	단정화	289	다이콘드라
170	부겐베리아	210	꽃도라지	250	발렌타인	290	문주란
171	썬로즈	211	휘토니아	251	팬지	291	자귀목
172	러브체인	212	프록스	252	디펜바키아	292	엽란
173	크로커스	213	홍옥	253	산초	293	만병초
174	구근류	214	무화과	254	분재	294	돌단풍
175	거베라	215	딸기	255	자바	295	골드세피아
176	시네나리아	216	야리향	256	브레이니아	296	단풍
177	트리쳐스	217	독구리난	257	피라칸샤스	297	수련
178	솔채	218	마란타	258	그레빌레아	298	아비스
179	리시안샤스	219	거미바위솔	259	구아바	299	금어초
180	만냥금	220	루드베키아	260	알부카	300	엘레강스
181	자트로바	221	야향화	261	엔젤트럼프	301	석류
182	아게라툼	222	스토크	262	안스리움	302	창포
183	작약	223	함수화	263	마꼬야나	303	홍작화
184	소철	224	관음죽	264	청화국	304	누운향
185	백화등	225	이소토마	265	불꽃	305	바이올렛
186	인시기네스	226	만리향	266	접시꽃	306	유자
187	폴리샤스	227	하이퍼리쿰	267	화백	307	펜다
188	아주가	228	히비스커스	268	광광나무		
189	굴나무	229	서황금	269	소코라코		
190	동백나무	230	와소니아	270	카타란샤스		
191	알라욱카리아	231	수련목	271	레베카		
192	아이리스	232	썬라이트	272	코프로스마		
193	마지나타	233	금란	273	크라슬라		
194	코레옵시스	234	구름자리	274	고추		
195	아라리아	235	문라이트	275	티보치나		
196	디지털니스	236	봉선화	276	바나나		
197	드라코	237	필로덴드론	277	금작화		
198	홍콩대엽	238	비로도	278	바이칼라		
199	토마토	239	무궁화	279	유카		
200	석창포	240	가지마루	280	덴섬		

○ 난(31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1	호접란	9	덴파레	17	밀토니아	25	리카스테
2	동양란	10	온시디움	18	파피오페딜리움	26	목부작
3	풍란	11	석곡	19	중국춘란	27	엔시클리야
4	심비디움	12	지고베타디움	20	틸란드시아	28	석부작
5	강기아남	13	오돈토	21	반다	29	새우란
6	동양심비	14	덴드로비움	22	덴드로칠럼	30	앙그레컴
7	막실라리아	15	브라시아	23	콩짜개란	31	크리스톡섬
8	카틀레야	16	환타지아	24	스페시오		